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업무 매뉴얼

본 매뉴얼은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하여 접수·처리하는 때에 담당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업무처리 방법을 수록했음

\* “(군)”은 접수처는 아니지만 지방세·자동차·토지정보 조회 및 그 결과 통지 기관임

행정자치부 · 국토교통부 · 국세청  
금융감독원 · 국민연금공단

# 목 차

## I. 개요 ..... 1

1. 목적
2.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식
3.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4.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기관(부서) 임무
5. 통합처리 조회·통보 기관(부서)별 임무

## II. 접수 ..... 3

1. 업무흐름도
2. 자격확인
3. 접수
4.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 입력
5. 신청서 이송
6. 신청 취소·변경 처리
7. 접수처 행정사항

## III. 정보조회 및 결과통보 ..... 14

1. 업무 흐름도
2. 조회·확인
3. 결과통보
4. 조회·결과통보 기관 준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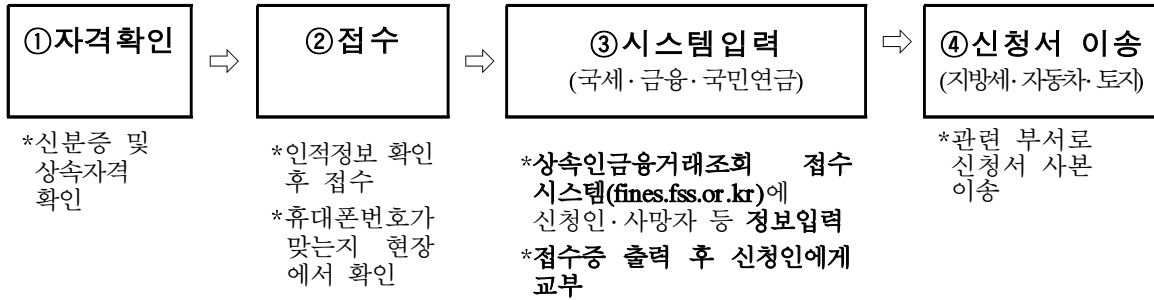
### \* 참고자료

1. 주요 질의답변 / 27
2. 각종 서식 / 36
3. 관련기관 연락처 / 41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업무 요령

## 1. 신청 접수처 :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접수 담당공무원

접수처에서는 통합처리신청서 접수·입력·접수증 출력 및 관련 조회기관으로 이송하면 임무가 종료됨



### ※ 유의사항

- ▶ 입력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대조, 신청인·사망자·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올바른지 재확인, 휴대폰 번호가 맞는지 접수완료 시 현장에서 필히 확인
- ▶ ‘통합처리신청서’를 8근무시간 내 FAX·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본에 “원본대조필”하여 이송
-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 문의 연락처 ☎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 (02)3145-5388
- ▶ 통합처리 취소·변경은 당초 신청인이 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

## 2. 재산 조회·통지 기관 : 시·군·구의 세무부서(지방세), 자동차부서(자동차), 지적부서(토지), 국세청(국세), 금융감독원(금융),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① (지방세·자동차·토지정보) 접수처로부터 이송 받은 요청 사항을 조회·출력 → 신청인(대리 신청시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

- \* 통지방법 : 우편·문자·직접방문수령 / 단,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Fax통지 불가
- \* 처리기간 : 접수처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결과 통지

② (국세·금융·국민연금 정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통해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 → 신청인(대리 신청시 대리인)에게 조회완료 안내 문자를 발송 →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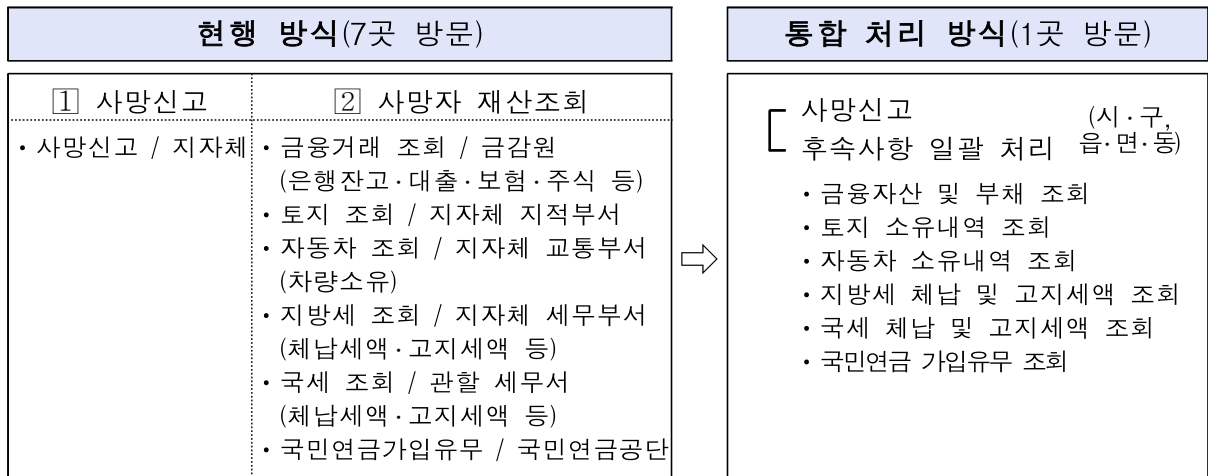
- \* 접수처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결과 통지
- \* 국세결과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 금융결과 (금감원 홈페이지) : [www.fss.or.kr](http://www.fss.or.kr)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본인 인증 절차 수반)
- \* 국민연금결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http://www.nps.or.kr) (콜센터 1355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

#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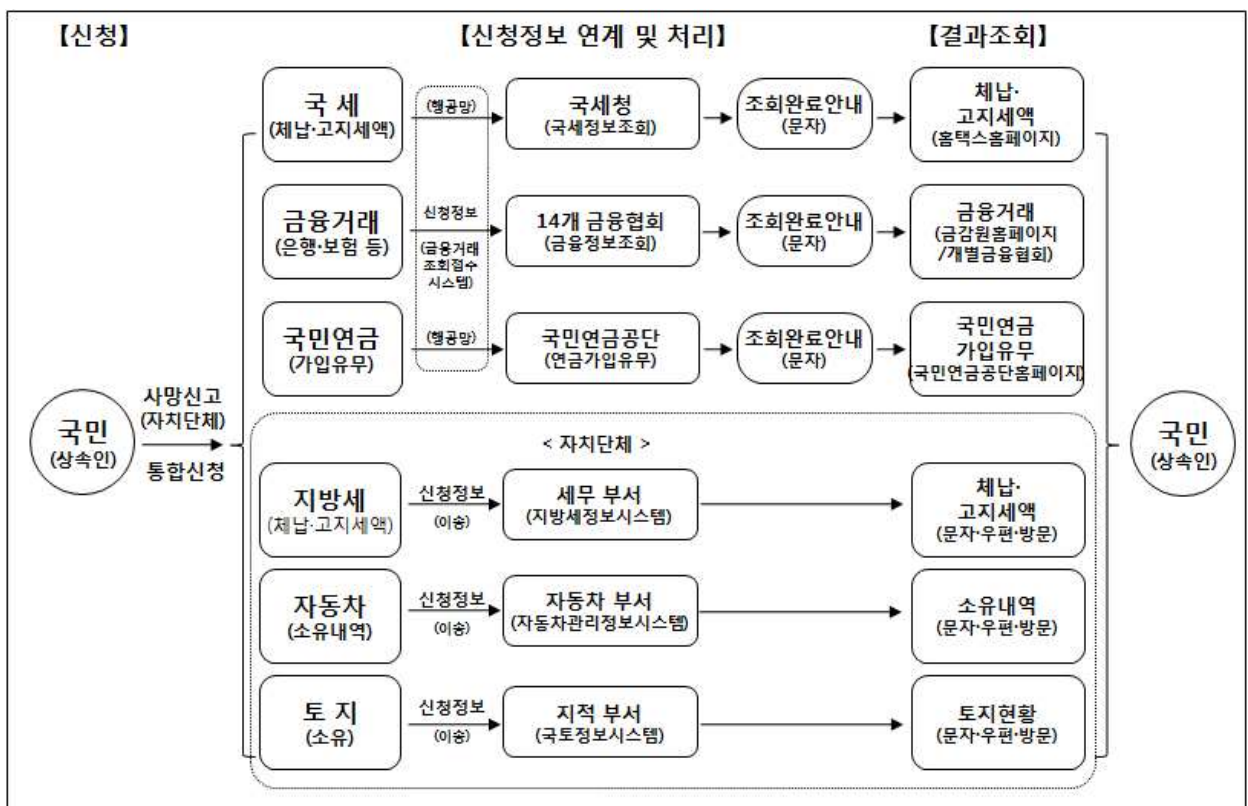
## 1. 목적

-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절차를 정함

## 2.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식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체계도】



### 3.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6종)

-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현황),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 4.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기관(부서) 임무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처가 됨(이하 “접수처” 라 함)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접수증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신청서 사본을 조회·통보기관(부서)에 이송

### 5. 통합처리 조회·통보 기관(부서)별 임무

※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인에게 결과 제공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상속인에게 직접 제공 (이하 같음)

- ① 시·군·구 세무부서 : 지방세정보(체납세액·고지세액)
  - 시·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사망자의 지방세 정보 조회신청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
- ② 시·군·구 자동차부서 : 자동차(소유내역)
  - 시·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사망자의 차량 소유정보 조회신청을 시·군·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
- ③ 시·군·구 지적부서 : 토지(소유현황)
  - 시·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사망자의 토지 소유정보 조회신청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

④ 국세청 : 국세정보(채납세액·고지세액)

- 시·구, 읍·면·동으로 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통해 조회요청을 받은 사망자의 국세정보 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

⑤ 금융감독원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시·구, 읍·면·동으로 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통해 조회요청을 받은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를 14개 금융협회\*와 각 금융회사의 협조로 조회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

\*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 종합금융협회, 대부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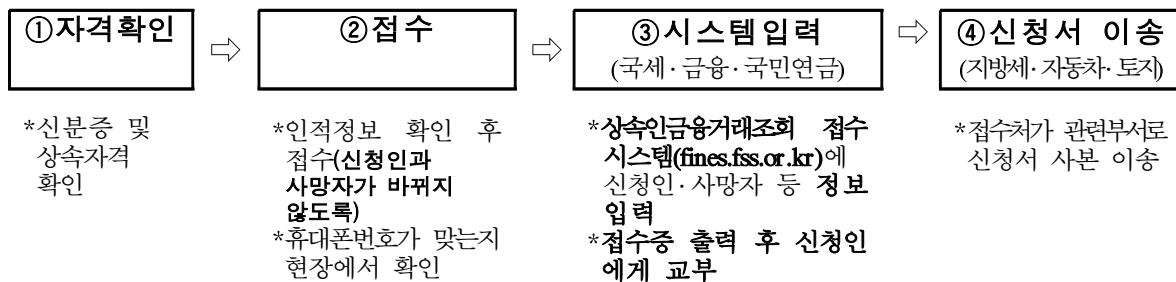
⑥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 시·구, 읍·면·동으로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통해 조회요청을 받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결과를 신청인(상속인)에게 제공

## II. 접수

### 1. 업무 흐름도

#### 【 접수 흐름도 】



#### 【 접수처 유의·안내사항 】

- ▶ 인적정보 필히 재 확인(입력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대조, 신청자 SMS수신 여부 확인)
- ▶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계좌가 거래정지 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 제한될 수 있음
- ▶ 접수증 교부 시, 신청 취소·변경은 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함을 안내

## 2. 자격확인(시·구, 읍·면·동)

-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하 “신청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신청서류 (구비서류)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

- 신청자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자인지 신분 확인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

### <통합서비스 신청자격>

- ▷ 신청인은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참고] 신분확인 관련(접수처)**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
  - 출생 년·월·일은 동일, 뒷자리의 첫째는 남자 7, 여자 8로 기재하고, 둘째 자리는 미국 1, 일본 2, 중국 3, 기타 4로 기재하며, 나머지 5자리는 여권의 뒷자리 5자리의 숫자를 기재
    - \* 예 : 미국인, 남자, 여권번호 A0134567인 경우 → 7134567
    - ※ 국적상실로 인해 가족관계기록이 없는 경우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공적 증명 서류 확인(예 : 국적상실 전에 인적사항(주민번호)등을 기록한 서류 등)
- 신청인이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대리인 여부 확인
  - 14세 미만은 대리인이, 14세 이상은 대리인 또는 본인이 신청
    - \* 부모가 이혼하였고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 관계가 표시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와 상속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
    - \* 사망한 부모가 친권자인 경우에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에서 대리인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결정문, 판결문 등)를 확인하여 대리인 인정
- 신청인이 사실혼 관계의 자녀인 경우
  - 친자관계 서류 확인(법원판결문 등)
-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 상속1순위 및 2순위 자격자에 한해 통합처리 함을 안내
- 신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 호적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주재 해당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원본(한글 번역본 첨부)을 제출받은 후 접수
- 신청인이 재외동포(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중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현지 주재국에서 상속권자가 작성·공증한 위임장과 이를 국내에서 번역·공증한 위임장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인증(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에서 한글번역·공증한 것을 확인하고 접수

○ 화교가 신청인인 경우

- 각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호적등본(번역본)을 제출 받음

### 3. 접수(접수처)

- 접수처는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인란에 서명

- 조회대상을 일부만 요청하는 경우

- 조회대상 선택 시 일부 항목만 요청하는 건은 해당 사항에 정확하게 표기(국세청, 금감원, 국민연금공단)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

- 신청서 접수 시 조회를 원하는 정보와 통지 방법,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

### 4.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 입력(접수처)

- 접수처는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 조회 신청내용을(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입력

- (시·구, 읍·면·동)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신청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휴대폰,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조회대상 항목, 신청인과 사망자의 신상 정보 등을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 시스템’에 즉시 입력

- 접수처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 배부용 안내문을 제공

\* 접수증은 신청정보 확인 및 추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 조회 시 필요

## 【참고】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 접속방법

### ①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에 접속

※ 최초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 및 인증서관리 프로그램 등 설치 필요

### ② 접속처는 기 발급된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비밀번호오류 횟수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각 시도별 계정 대표책임자\*를 통해 처리(금감원에서는 조치 불가)
- 각 시도별 계정대표책임자는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회사책임자조회] 버튼 클릭하여 조회 가능

### ③ 화면 상단의 [메뉴보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 메뉴 클릭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메뉴



## [참고] 신청서 입력 및 접수증 출력 방법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

- ① 좌측 서브메뉴[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클릭
- ② 상속인 정보, 신청인 정보, 사망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규 접수내용 입력

①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신청서 접수 ◎ 새로작성

접수기관 :  입력재D :  접수지점 :  지점연락처 :  -  -  접수자명 :

접수일자 : 2015/6/4

② **상속인(상속인·금지산자의 후견인(성년후견인))**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신청인(또는 후견인)에 신청

상속인 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자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 이메일선택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주소	<input type="text"/>
피상속인 등과의 관계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	상세주소	<input type="text"/>

③ **신청인(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  상속인 본인인 경우

신청인 성명 (신청인, 후견인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자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 이메일선택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우편번호"/>	주소	<input type="text"/>
		상세주소	<input type="text"/>

조회대상자(사망자 등)와 신청인(상속인 등)을 바꾸어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사망자·실종자·금지산자·피성년후견인(피상속인)**

사망자 등 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사망일(선고일)	<input type="text"/>		
발생사유	<input type="text"/> 사망 <input type="button" value="▼"/>		
조회대상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은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명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손해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체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신전료금융회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축은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새마을금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림조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투자회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예탁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금융회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협동조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세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공단 <small>* 은행연합회, 신보, 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캠코 포함</small>		

※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교부시 반드시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명된 피상속인의 경우 계좌정보와 개명 후 정보가 다를수 있으므로 개명 전, 후 정보를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 저장 후 접수증출력

- ① 접수처/접수자 정보 : 접수기관, 입력재D는 자동 입력됨. 접수지점, 지점연락처, 접수자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함
- \* (예) 접수기관 :       입력재D :       접수지점 :       지점연락처 :       접수자명 :
- ※ 접수지점, 지점연락처, 접수자명은 문제발생 시 연락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

② 상속인 : 상속인 인적사항을 입력

○ 상속인 성명을 클릭 → 내외국인 구분, 주민번호, 신청자명 입력 → [검색] 클릭 → 실명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확인]을 클릭

※ **실명인증시** 문제가 있으면 에러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실명인증 오류 관련 안내가 팝업. NICE신용평가정보 콜센터 1600-1522로 문의하여 문제 해결

※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가 정지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중 하나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추후 신청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시 본인인증수단이 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함**

③ 신청인 정보 : 대리인 신청 시 입력(상속인 본인 신청의 경우 “상속인 본인”을 체크)

○ 대리인 정보 등록 시, 대리인 성명을 클릭 → 내외국인 구분, 생년월일, 신청자명을 입력 (상속인 정보와 입력방법 동일)

④ 피상속인 정보 :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일(선고일), 조회할 금융회사를 선택

※ 피상속인의 경우 NICE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실명인증이 안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오류 메시지가 나더라도 **서류상의 주민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확인]을 눌러 입력 가능함**(주민번호 일치여부 필히 확인할 것)

⑤ 저장 후 접수증출력 : 버튼 클릭 → 접수증 팝업 → 인쇄 → 신청인에게 제공

※ 접수증 상의 상속인, 신청인, 피상속인 및 접수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

### ③ 접수내역 조회 및 접수증 출력

#### 접수내역 조회 및 접수증 출력

① 검색

② 인쇄

일련 번호	접수번호	순번	접수일자	구분	조회 대상자 성명	사망년월일	조회 신청자 성명	연락처	관계	접수지점명	입력ID	접수증 출력
1	801304341	1	20130816	신규	홍길동	20130801	홍길동	02-31455114	삼촌고모	금융감독원지점	00109270098	인쇄

① 검색 : 상단 검색조건을 입력후 → [검색] 버튼 클릭

② 인쇄 : 팝업에서 “접수증 출력” 항목의 [인쇄] 클릭 → 팝업

- 특정 금융회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지점에서 접수증 재출력 가능
- 접수증 출력시 지점명, 조회자명, 지점전화번호, 조회사유를 입력해야 접수증 출력이 가능

## [참고] 금융감독원 주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 FINES 로그인 실패 ○ 보안프로그램설치오류 등	정보화전략실 감독정보시스템 1팀	02-3145-5401
○ 상속인 시스템 입력오류, 접수증 출력 등 ○ 상속인이 조회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등	정보화전략실 감독정보시스템 2팀	02-3145-5388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 문의사항 등	소비자보호감독국 원스톱서비스팀	1332(2번)
○ 실명확인 오류 등 실명인증 관련 문의	NICE 신용평가정보 온라인실명등록센터	1600-1522

### 5. 신청서 이송(접수처)

- (시·구, 읍·면·동) 신청서를 8근무시간내 FAX·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본에 “원본대조필”하여 관련부서(세무부서, 자동차부서, 지적부서)로 각각 이송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이송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의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접수처와 관련부서가 동일한 사무 공간(예: 민원실)인 경우에도 신청서 원본은 접수처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관련부서로 이송
    - \* 세무부서 : 지방세정보시스템(서울시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사망자의 지방세 정보 조회처리
    - \* 자동차부서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망자의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처리
    - \* 지적부서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조회처리
- ※ ‘국가 공간정보 센터 운영규정’상의 별지 제4호 서식(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 자료 이용신청서)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는 접수처(담당공무원)에서 내부 확인하고 신청인은 제출 생략

## 6. 신청 취소·변경 처리(접수처)

- 신청인이 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변경·취소를 요청 할 경우 접수처는 신청인의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입력 및 조회기관으로 이송(신청서 이송과 동일한 방식)
- 변경·취소는 당초 신청인이 “접수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
- 신청인이 통합처리신청서 원본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복사본에 ‘원본 대조필’하여 신청자 및 접수처가 서명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줌

### [참고] 신청서 변경·취소 방법(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의 경우)

#### 접수내역 조회 및 신청서 내용변경/취소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접수내역 조회' (Heir Financial Transaction Inquiry Service - Application Record Inquiry)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fields for '접수번호' (Application No.), '상속인' (Heir), and '상속인주민번호' (Heir's Resident No.). Below this is a table listing application records. A red box highlights the first record with application number 80130001. A blue arrow points from this record to a detailed view of the application. The detailed view shows fields for '상속인(상속인·금치산자의 후견인(성년후견인))' (Heir/Executor/Adult Guardian) and '신청인' (Applicant). The '신청인' section includes fields for name, ID, phone number, email, and address.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신청서 취소' (Cancel Application) and '신청서 변경' (Modify Application), both highlighted with red boxes and numbered 4 and 3 respectively.

- ① 신청서 변경/취소 대상 선택 : [접수내역 조회 및 접수증 출력] 의 검색결과 팝업에서 접수번호 클릭
- ② 조회사유를 입력하고 변경/취소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③ 신청서 내용변경 : [신청서변경] 버튼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 상속인, 신청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수정가능하며, 수정사유와 접수자 이름이 올바르게 입력되어야 완료
- ④ 신청서 취소 : 우측 하단의 [신청서취소] 버튼클릭 → 즉시 취소됨
  - 취소사유와 접수자 이름이 올바르게 입력해야 하며, **취소는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함**
  - 접수내역이 협회에 전송되기 전이면 변경/취소 내용이 즉시 반영되며, 전송 후에는 해당 협회 및 금융회사에 반영 시까지 수일이 소요됨

## 7. 접수처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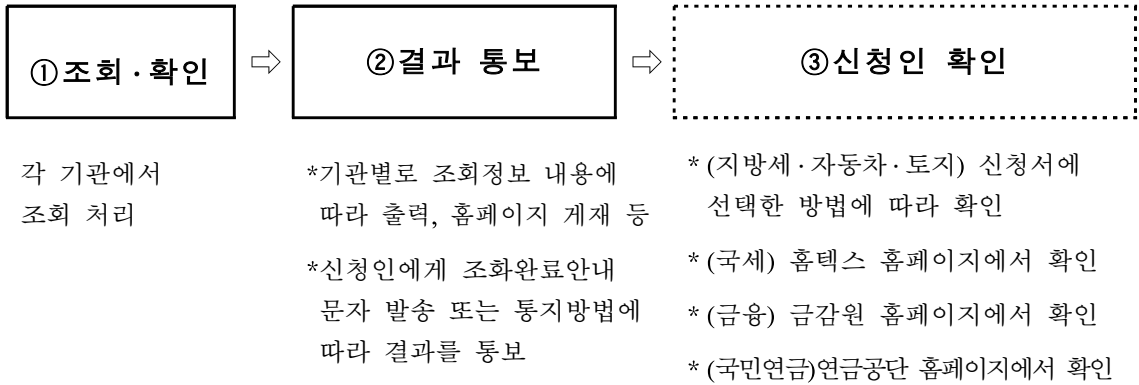
-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안내문(별도 제공예정) 비치
- 통합처리 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상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 \* 누설 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피상속인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신청인) 저촉
  - \* 준수사항의 불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
- 신청서류 및 관련 기록대장을 보관(1년 보관)
-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 기록·유지 및 부서장이 주기적(일, 주)으로 확인



### Ⅲ. 정보조회 및 결과통보

#### 1. 업무 흐름도

【 정보조회 및 결과통보 흐름도 】



#### 2. 조회·확인(각 소관기관·부서)

- (지방세·자동차·토지정보) 접수처로 부터 이송 받은(FAX·이메일 전송 또는 사본이송) 신청내용을 세무부서, 자동차관리부서 및 지적부서 업무 담당자가 각각 조회 처리
- (국세·금융·연금정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로 부터 조회 요청받은 신청 내용을 소관 기관(국세청,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처리
  - 국세청 : 국세체납액·고지세액 정보
  - 금융감독원(각 금융협회) : 금융거래 정보 등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 유무

### 3. 결과 통보

#### ① 지방세 정보(체납세액·고지세액)

<b>절차</b>	<p>(시·군·구) 세무 담당자 → 신청인에게 결과 제공</p> <p>* 사망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체납세액(전국 조회)</p> <p>* 사망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주민등록지 시·군·구만 조회됨)</p> <p>※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는 전국조회 결과가 아님을 안내</p>
-----------	--

○ (시·군·구) 세무부서 담당자가 접수처로부터 이송 받은 조회신청 내용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또는 세무종합정보시스템(서울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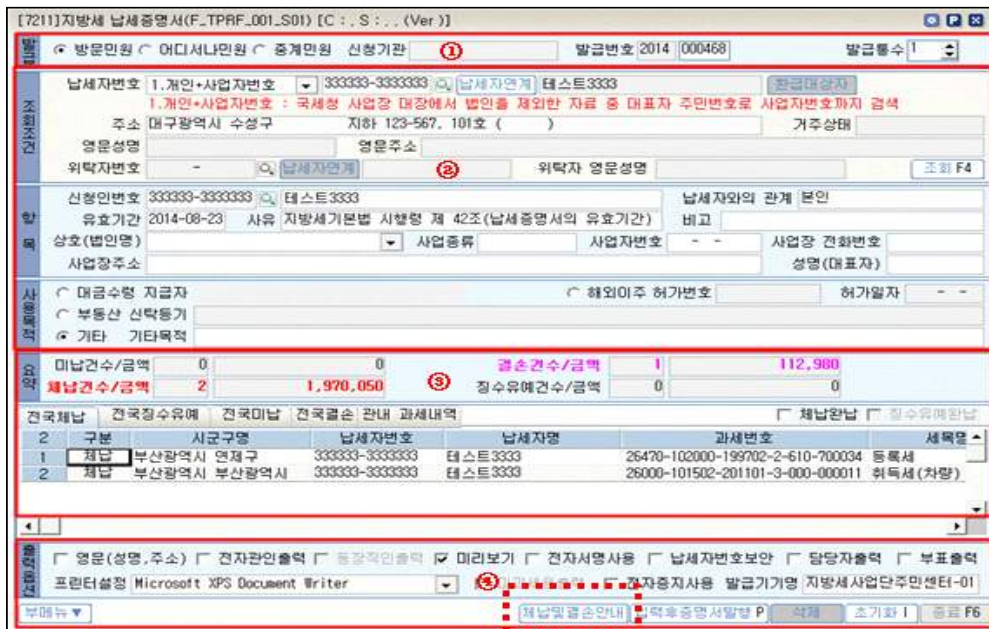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전국 체납·결손내역 조회순서(화면번호 : [7118] 전국체납조회)

- ① 납세자번호(주민번호) 등을 입력    ② [조회 F4] 버튼을 클릭
- ③ “체납정보” 탭과 “결손정보” 탭에서 전국 체납 및 결손 내역을 확인

- 전국 체납·결손내역 출력순서(화면번호 : [7211] 지방세 납세증명서)

- ① 방문민원, 어디서나민원, 중계민원을 선택    ② 납세자번호(주민번호) 등을 입력 → [조회 F4] 버튼을 클릭    ③ 전국체납, 전국결손 내역 등을 확인
- ④ 전국체납, 전국결손 내역이 존재하면 [체납및결손안내] 클릭    ⑤ 안내장 출력



**5**

## 전국 체납 및 결손내역 안내

납세자명	테스트3333	납세자번호	333333-*****
총 체납 건수	2	총 체납 세액	1,970,050
총 결손 건수	1	총 결손 세액	112,980

연번	자치단체	체납 및 결손			전자납부번호	연락처	비고
		과세년월	세목	세액			
1	부산광역시 연제구	1997-02	등록세	187,230	26470-1-70-97-6-00 001-9	051-5 8- 000	
2	부산광역시 동진구	2011-01	취득세 (차량)	1,772,820	26000-6-13-01-1-11 001-7	051-888-0 00	
3	부산광역시 동진구	2010-11	자동차세 (자동차)	112,980			결손
계				2,083,030			

체납 및 결손내역은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납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7월 29일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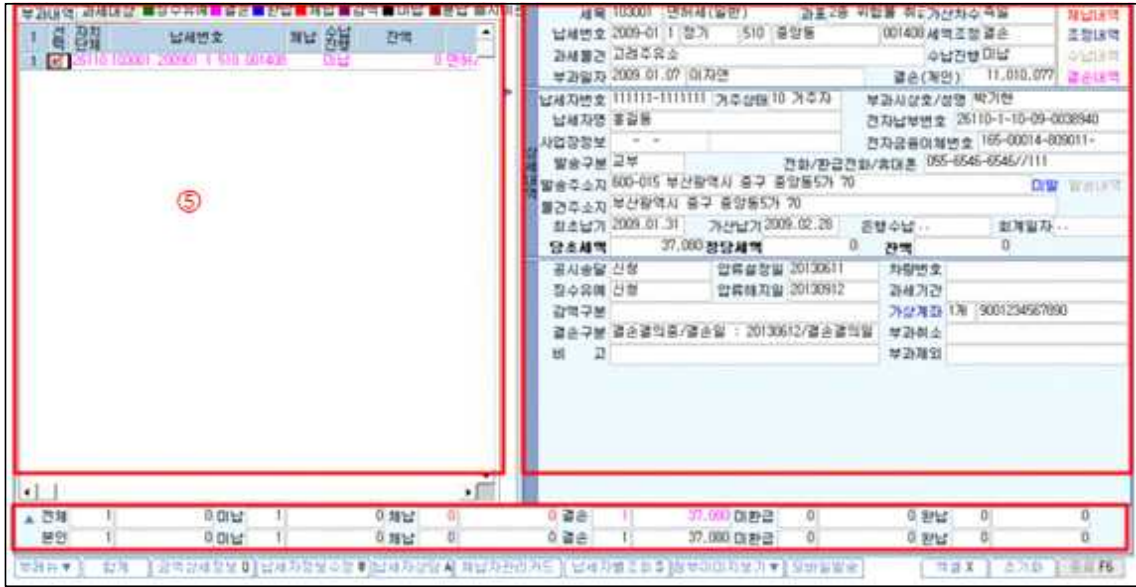
\* 본 안내문은 변경서식이 아니며, 민영 광고물입니다.      담당자: 최홍수    문의처: 02-2076-1392

- 관내 미납 조회순서 (화면번호 : [7111] 납세자통합내역조회)

- ① 납세자번호(주민번호)를 입력 ② “미납” 선택 ③ 추가 조회조건 선택 및 조건 입력
- ④ [조회 F4] 버튼을 클릭하여 관내 미납 자료 조회 → 하단에 표시됨

The screenshot shows the '납세자통합내역조회' (Taxpayer Integrated Record Search) interface. Key elements are highlighted with red boxes and numb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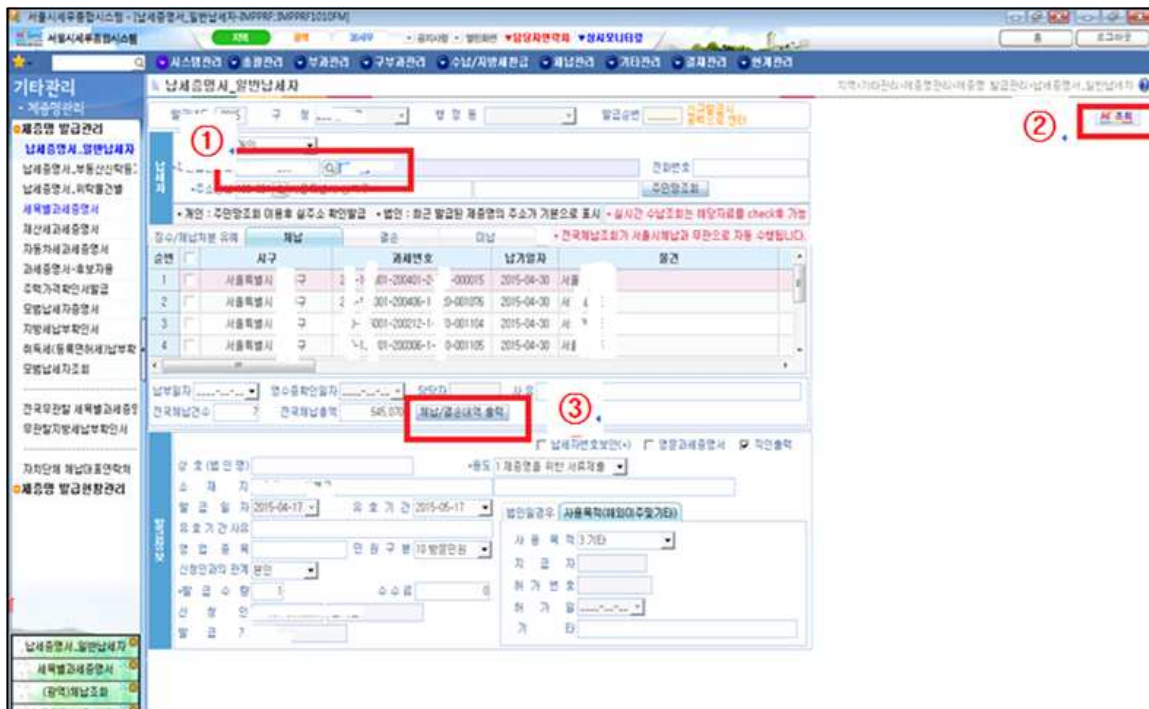
- 1:** The taxpayer ID field (납세자번호) containing '11111-111111'.
- 2:** The '미납' (Arrears) option selected in the '체납' (Default) dropdown menu.
- 3:** The '추가' (Add) button in the search criteria section.
- 4:** The '조회 F4' (Search F4) button at the bottom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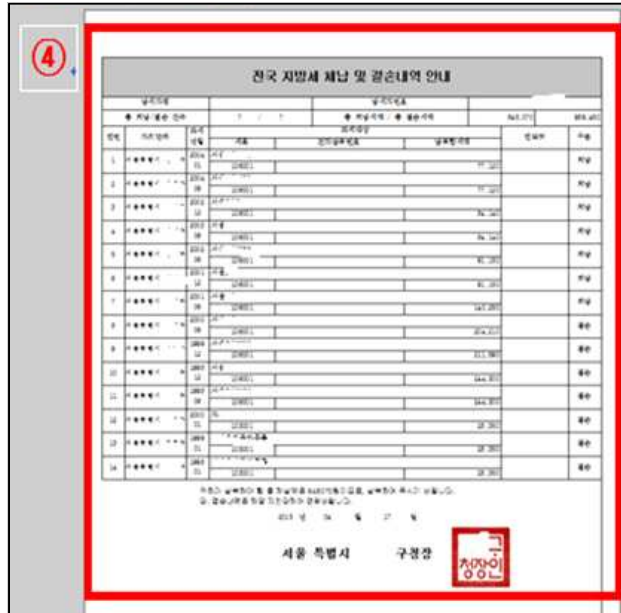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 체납·결손내역 조회·출력 순서

- ①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조회 ③ 체납/결손이 있는 경우만 [체납/결손내역 출력] 버튼 활성화됨 → 버튼클릭 ④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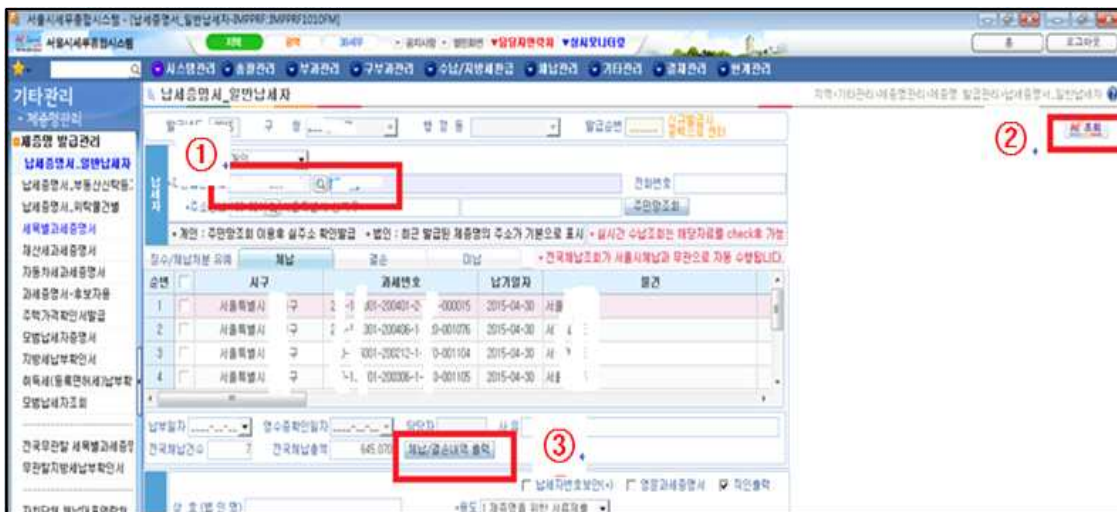




\* 결과 통보하는 출력물에 안내 문구를 고무인으로 제작하여 표시  
 (예시) “이 자료는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결과내역은 조회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조회 순서

- ①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조회 ③ 유효기간 사유에 과세 관청과 세목이 표시됨 (출력은 안됨)



○ 휴대폰 안내 문자 예시

- \* (○○○)님이 신청하신 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 내역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구청 세무과 -
- \* (○○○)님이 신청하신 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청 세무과 -

## ② 자동차 정보(소유내역)

<b>절차</b>	(시·군·구) 자동차 담당자 → 신청인에게 결과 제공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에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소유 정보(전국조회)
-----------	--

○ (시·군·구) 자동차부서 담당자가 접수처로부터 이송 받은 조회신청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출력 순서

① 민원조회 → 정보검색 ② 주민번호입력 ③ 조회 → 출력



○ 출력화면(신청인 통지용)

정보 검색 (등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PR00-10 : DMK003Q						
자동차 등록번호 :		성명(상호) :		년 식 :		
차 대 번 호 :		차 종 :		조회조건 :	등록	
주민(사업자)번호 :		차 명 :		PAGE :	1 / 1	
관 할 사 도 :		색 상 :		출력일시 :	2015-05-29	9:36:42
자동차번호	차명	용도	소유자성명(상호)	주민(사업자)번호	최종등록일	차대번호
		모달연도	사용본거주주소			색상
		2				
		2006				
		2				
		2014				

\* 결과 통보하는 출력물에 안내 문구를 고무인으로 제작하여 표시  
(예시) “이 자료는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증명서류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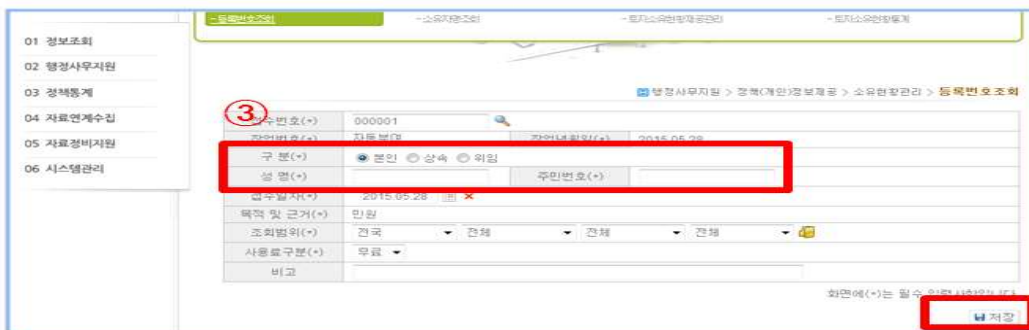
○ 휴대폰 안내 문자 예시

- \* (○○○)님이 신청하신 자동차 소유내역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구청 교통행정과 -
- \* (○○○)님이 신청하신 자동차 소유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청 교통행정과 -

③ 토지 정보(소유내역)

절차	(시·군·구) 지적 담당자 →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사망자 명의의 토지 소유 정보(전국조회)
----	--

- (시·군·구) 지적부서 업무담당자가 접수처로부터 이송 받은 조회신청 내용을 조회(‘개인별토지소유 현황’)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
- 「국토정보시스템」 접속 및 조회 화면
  - ① 국토정보시스템에 접속(<https://nsdis.go.kr>)
  - ② 행정사무지원 → 정책(개인)정보제공 → 소유현황관리
  - ③ 구분 선택 →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 저장
  - ④ 등록번호 조회 → 조회
  - ⑤ 등록번호조회결과 ⇨ 출력







○ 휴대폰 안내 문자 예시

<p>* (○○○)님이 신청하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 ○○구청 지적과 -</p> <p>* (○○○)님이 신청하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결과, 토지소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청 지적과 -</p>
--

④ 국세정보(체납세액·고지세액)

<p>절차</p>	<p>(국세청)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문자 발송 → (홈택스홈페이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상세내역을 직접 확인 * 사망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체납세액 및 납기미도래 고지세액</p>
-----------	--

- 국세청에서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지하고 신청인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결과 직접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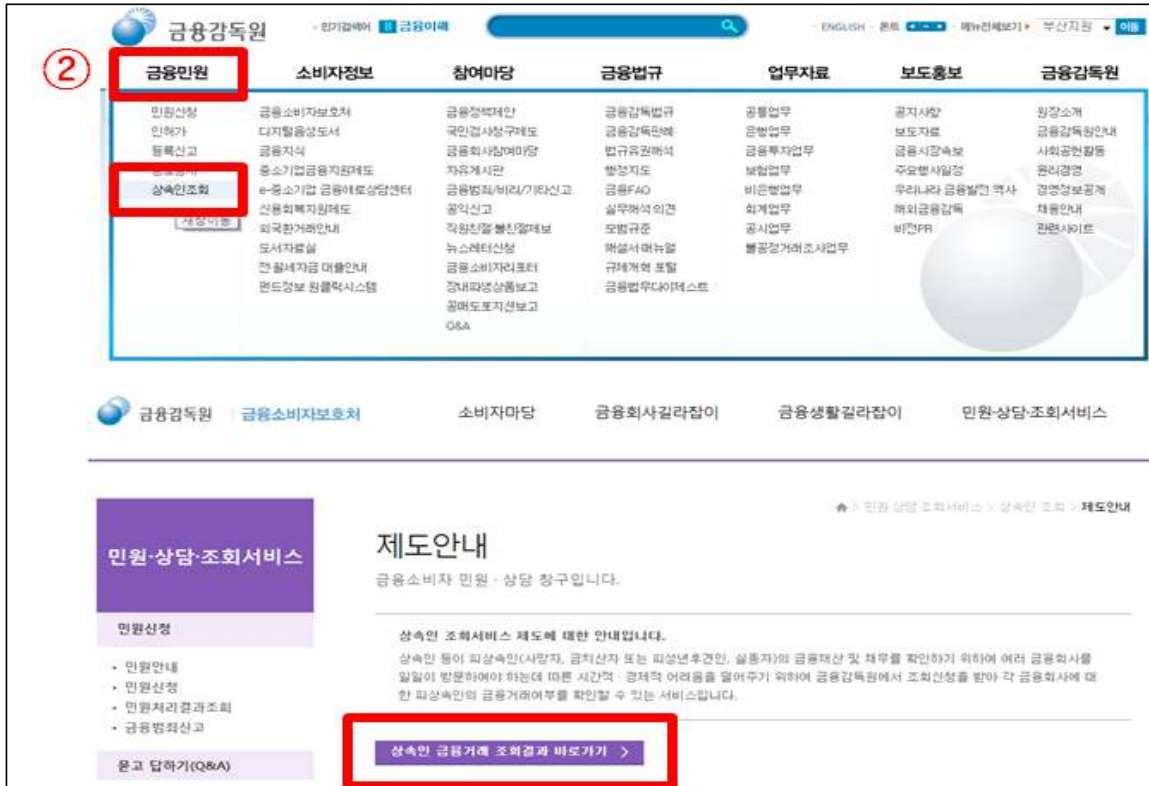
⑤ 금융거래 정보(예금·보험·채무내역 등)

<p>절차</p>	<p>금융회사 → 금융협회 →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문자 발송 → (금감원 홈페이지)신청인이 결과확인 * 금융거래정보는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 *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 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통보(조회 신청일 기준)</p>
-----------	---

-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금융계좌내역 및 채무액을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하고, 각 협회가 신청인에게 문자 등으로 조회완료 통지하면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도 협회단위로 조회 가능)에 접속하여 통합조회결과 직접 확인
- 통합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조회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통합서비스 신청 접수증만으로도 금융정보 조회 가능
    - \* 대리인의 경우 금융사가 인정할 수 있는 위임관련 서류 지참 시 위와 동일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조회 방법

- ①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 ② 금융민원 → 상속인 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 ③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 입력 ※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본인 인증 진행
- ④ 조회 클릭



<금융조회 대상 정보 및 처리기관>

☑ 대상 정보

- 신청일 기준 사망자(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금융자산
- 신청일 기준 사망자(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부채
-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 중인 예수물 등
- 신청일 기준 사망자(피상속인) 명의의 산업재해보험료·임금 체납정보 등

☑ 처리 기관

- **(금융회사)** 은행, 상호금융회사(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협회 소속 금융투자회사, NICE신용평가정보, KCB, KED
-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기관)**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b>절차</b>	<p>(국민연금공단)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 문자 발송 → (국연금공단 홈페이지)상속인이 로그인하여 결과 확인</p> <p>*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무</p> <p>*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가능하며, 필요시 공단에서 전화상담 병행 예정</p>
-----------	---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상속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http://www.nps.or.kr))에 접속하여 조회결과 직접 확인
- 휴대폰 안내 문자 예시(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 (사망자 성명)님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및 조회 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ps.or.kr)
- ② 민원신청 → 개인전자민원 → 조회/증명 → 사망자 가입유무 조회(상속인)
- ③ 로그인(주민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 ④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상속인)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화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 *	조회
<p>※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자에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상속인이 지자체에 사망관련 후속조치(금융거래, 상속재산, 세금체납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를 일괄 신청 및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p>		
국민연금 가입이력 확인결과	(사망자 성명)님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습니다.	
- 사망관련 급여 제도안내 -		
<p>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이 사망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사망원인이 된 질병, 부상의 발생시기, 유족의 범위 등에 따라 사망관련 급여의 수급가능여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어떤 분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에 내방 또는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a href="#">지사담당자 찾기</a> ☎ 바로가기</p>		
<p>※ 사망관련 급여 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수급요건은 각각 상이함)</p>		
<p>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 상담예약 신청」 을 하시면 공단 지사에서 고객님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a href="#">연금급여 상담예약 신청</a> ☎ 바로가기</p>		

#### 4. 조회·결과통보 기관 준수 사항

○ 동 업무와 관련한 개인신상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 누설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피상속인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신청인) 저촉

○ 통보 기한

① 지방세 정보 : 7일 이내 / ② 자동차 정보 : 7일 이내

③ 토지 정보 : 7일 이내 / ④ 국세 정보 : 20일 이내

⑤ 금융거래 정보 : 20일 이내 / ⑥ 국민연금 정보 : 20일 이내

\* 통보 기한 산정은 조회 결과 발송일(문자·우편·직접방문 수령, 금감원홈페이지 등에 결과 게재) 기준

(예시) 2015. 5.1일 접수 ⇨ 지방세정보 5.12일, 금융정보 6.1일

##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 관련

Q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 -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Q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면 되나요?

A :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 가시면 됩니다.

- 업무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민원 업무담당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주소지의 성북구청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Q : 통합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Q :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A :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에 대해서 문자 및 우편을 선택하셨다면,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로 간단한 결과내용을 송부하며, 신청인의 주소지로 토지내역, 자동차정보검색 출력결과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세·금융·국민연금정보는 조회완료가 되면 각 기관에서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신청인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 결과는 얼마만에 알 수 있나요?

A : - 신청서양식에 나온 것처럼 처리기간은 7일에서 20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로, 국세·금융·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 취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 - 신청자는 신청한 기관에 오셔서 직접 취소·변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취소·변경은 신청 다음날(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18시)까지만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 상속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모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A : - 아니요.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대리인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결정문, 판결문 등)를 확인하여 대리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Q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서 사망자의 인적사항이 “NICE신용평가 정보에 등록되지않아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A : - 사망자의 경우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확인]을 클릭 하면 됩니다.  
- 단, 상속인과 대리인의 경우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Q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상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A : -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서에 기입하고,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도 입력해야 합니다.





Q : 신청서 이면 하단(별지1호서식)의 세무담당자, 지적담당자, 자동차 담당자 확인란은 누가 서명하고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A : - 접수처가 서명하고, 신청서 사본 이송에 따른 세무·자동차·지적부서 담당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회결과 통보 여부가 아님)  
- 접수처와 세무·자동차·지적부서 담당자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접수처가 유선으로 연락하여 통화자 이름, 시각 등을 기록합니다.  
- 접수처와 세무·자동차·지적부서 담당자가 동일한 사무공간(동일 청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세무·자동차·지적부서 담당자가 직접 서명을 해도 됩니다.

Q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사망을 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누락되어 사망신고를 하면서 통합처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A : - 아니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Q :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해당됩니다.

####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직계비속 :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한 친족, 양자 및 혼인 외의 출생자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을 출생시킨 친족, 양부모도 양자의 직계 존속에 포함

○ 3순위 : 형제자매 ←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인 자격 없음

- 이복, 동복, 형제자매:(부 또는 모의 어느 한쪽만을 같이하는 형제자매 포함)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인 자격 없음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와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비속

※ 참고사항

구 분	내 용
배우자의 상속순위	- 1, 2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공동상속
계모자와 적모서자 관계의 상속	-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도 없음
대습상속	-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의 결격사유가 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인의 순위로 상속되는 것
동시사망의 경우	-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상속이 이루어짐 - 다만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짐(제적 등본의 사망일시, 사망진단서로 확인)
사실혼 관계의 상속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음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인정됨(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 등을 통한 확인)
친권	- 이혼으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했고 생존한 부·모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로 친권관계 확인
후견인 지정	-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법원의 결정문, 판결문 등으로 인정)
피성년후견인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물로 확인(피성년후견인 신고,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등을 확인)
상속포기	-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인 여부 판단함
양자의 상속	-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한 상속인이 됨
유언의 경우	- 유언장은 공정증서(사서증서 인증이 아님)이거나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함

## □ 상속 순위 관련

Q : 부부 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

A :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출생자녀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사망자의 부모가 공동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도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Q : 부부가 동시에 모두 사망한 경우?

A :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 각각의 부모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는 각각의 형제자매가 상속

Q :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A :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상속, 부모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가 상속

Q : 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A : 자부, 손자, 손녀가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함 (자부인 경우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가능)

Q : A가 사망, A의 자녀는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망, B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상속은?

A : 대습상속인 없다면 C, D만이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 인정되므로 B의 아들과 배우자가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Q : 부모가 모두 사망, 자녀와 배우자도 없는 A가 사망, A의 친형제 자매로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망하고 B의 아들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상속은?

A : B의 아들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으로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Q :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A가 사망, A의 삼촌으로 B, C, D가 있음. B는 A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A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B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C, D가 상속인이 됨

## □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운영 관련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범위는?

A :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와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 예수물 등)

\* 보증채무의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동 거래에 대해 보증인이 보증제공하여 동 회사의 전산원장에 등록된 채무에 한하여 조회되며,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어음배서 등 전산원장 비등록분은 제외

Q : 사망자(피상속인) 보유 금융계좌의 거래내역도 조회 가능한지요?

A : 금융기관은 신청인에게 먼저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계좌 유무(예금은 구체적 금액을 통보)만 알려주고 있음.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 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 가능

\* 대리인의 경우 금융사가 인정할 수 있는 위임관련 서류 지참시 위와 동일

Q : 조회가능한 금융회사 및 협회의 범위는?

A :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종합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부업 신용정보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연락처는 안내문 참고)

Q : 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한지요?

A : 우편접수는 불가능 하며, 신청자(상속인)가 직접 신청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상속인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은 상속인 등 법률상 명의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유무를 확인후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동 권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임

\*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받습니까?

A :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사실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각 금융권별로 각 금융협회가 조회결과를 SMS서비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괄조회 가능)  
한편 신용카드 채무의 경우 협회와 별도로 카드사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음.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임. 확인된 계좌의 상세한 거래내역이나 계좌번호 등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A : 우편으로 받을 수는 없음. 금융실명법에 의거 금융기관은 상속인 등 명의인의 거래정보 제공과정에서 동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관련 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 신청서 접수후 6~20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다만 금융기관별로 통보시기가 다르며 전산화 정도에 따라 동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따라서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안내문 참고)

## □ 국민연금 가입유무 관련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와 관련하여 가입이력 있는 경우란 ?

A : 1개월 이상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또는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 1·2급만 해당)가 사망한 경우이며, 국민연금 미가입자, 전액 미납자, 반환일시금 기 지급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력 없음으로 안내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의 종류와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A :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사망 시점의 가입상태, 보험료 정상 납부여부, 유족의 신분요건, 연령요건 및 생계유지요건 등에 따라 급여의 유형이 결정되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Q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불가하지만 사망자의 1·2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가입이력 및 생계유지 여부에 따라 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A :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A : 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 가능함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및 동조회결과 등을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제출해야할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용도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용)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20 . . .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위임하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귀중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위해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금융) 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 다음날(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20일
------	-----	------	--------

신청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 )		* 접수처 확인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과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년	월	일	자동차 번호	*이륜차 제외	

대리인 (대리 신청시 에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대리인		* 접수처 확인란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 사망신고 후속조치 조회 내용

구분	조회 선택( 조회를 원하는 항목 [ ]에 V 표시)	조회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 ] 금융기관 전체 *본 항목 "V" 시에는 아래 항목 "V" 하지 않음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금융협회,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 예금보험공사 [ ] 은행 [ ] 우체국 [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금융투자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저축은행 [ ] 새마을금고 [ ] 산림조합 [ ] 신용협동조합 [ ] 한국예탁원 [ ] 종합금융회사 [ ]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국세	[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
국민연금	[ ] 국민연금 가입 유무	
토지	[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지적부서 방문수령 [ ] 우편 [ ] 문자(SMS)
지방세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지방세	[ ] 세무부서 방문수령 [ ] 우편 [ ] 문자(SMS)
자동차	[ ] 자동차 소유내역	[ ] 자동차부서 방문수령 [ ] 우편 [ ] 문자(SMS)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각 조회 서비스 항목별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조회는 20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지방세·자동차·토지관련 조회는 각각 7일(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이내입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조회 처리를 위해 각 처리기관에 신청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제공하며, 각 처리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처리기관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각 금융협회
- 신청자(상속권자)는 이 건으로 취득한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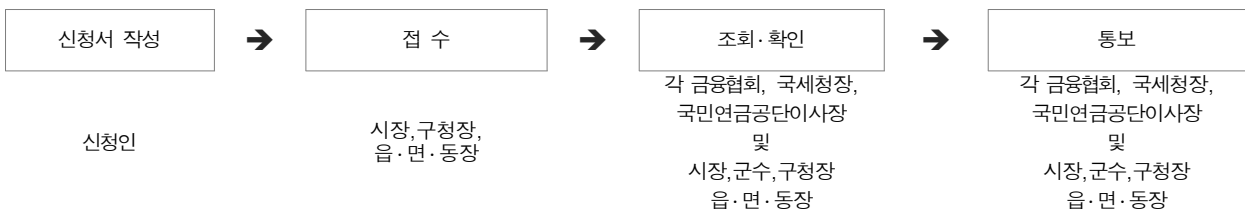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세무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서명)	지적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서명)	자동차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서명)
---------------------------	------	---------------------------	------	----------------------------	------

처리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취소·[ ]변경 신청서

※ 취소·변경 신청은 통합처리신청 자격자에 한하며 당초 신청인이 통합처리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송기한)	즉시(3근무시간)
------	-----	----------------	-----------

신청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 )		* 접수처 확인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과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년	월	일	

대리인 (대리 신청시 에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도로명 주소				

변경내용 (변경시만 작성)	당 초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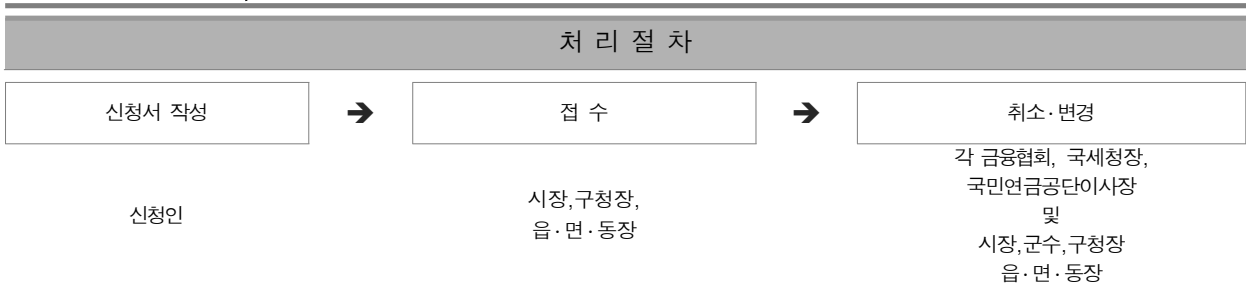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 없음
----------	--	--------

위와 같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 ]취소·[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3**

**통합처리 관련기관 연락처**

\* 2015. 5월 기준

기 관	부 서	전화번호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73
	지방세정책과	02-2100-3593
	지방세입정보과	02-2100-364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4876
국세청	징세과	044-204-3037
	차세대시스템개발단	02-6970-2714
금융감독원	원스톱서비스팀	1332(2번)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02-2240-1136